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9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송갑석·인재근·민형배

김원이 · 박 정 · 김경만

전용기 · 이용빈 · 신정훈

정춘숙 · 이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.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·군·구 중 138개 시·군·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, 특히 2018년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·군·구 중 8 9개(39%), 3,463개의 읍·면·동 중 1,503개(43.4%)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.

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·의료·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, 관리비용의 증가,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,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. 따라서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,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·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 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"인구감소지역"을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·경제·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12호 신설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.
- 라.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하고,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 1조의4 신설).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 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·경제·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 중 "자립적 발전을 위하여"를 "자립적 발전, 인구감소에 따른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"를 "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,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 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"로 한다.

제3장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지역의 인구감소 대응) ①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인구감소지역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
- 2. 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을 위한 적정기준에 관한 사항
- 3.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
- 4. 교통·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
- 5. 기업유치,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- 6.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
- 7.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8.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, 마을·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- 9.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,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 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가는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
	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
	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
	<u>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·경</u>
	제・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
	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
	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.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	무)
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	
의 특성에 맞는 <u>자립적 발전을</u>	<u>자립적 발전,</u>
<u>위하여</u>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	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
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・	<u>복 등을 위하여</u>
추진하여야 한다.	
제9조(시행계획의 평가 등) ① 국	제9조(시행계획의 평가 등) ①
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	
별 시행계획, 시·도 시행계획	
및 제18조의2에 따른 <u>국가혁신</u>	국가혁신
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	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, 제21
하여야 한다.	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
	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
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**プ}----.**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제21조의4(지역의 인구감소 대응)
 - ①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인구감소지역 발전 목표에

 관한 사항
 - 2. 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을 위한 적정기준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
 - 4. 교통·물류망 및 통신망 확 충에 관한 사항
 - 5. 기업유치,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 - 6.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

촉진에 관한 사항

- 7.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사항
- 8.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 런 지원, 마을 · 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 화에 관한 사항
- 9.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 동 활용,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국가는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